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11.13.)

조례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
2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17

의안번호 제2015 - 85호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은(안 제2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라. 행위제한(안 제4조)

마.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안 제5조)

바. 점검결과 조치 등(안 제6조)

사.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7조)

아. 업무의 분담(안 제8조)

자. 예산확보 및 지원(안 제9조)
차. 표창(안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군수 및 관리주체의 행위금지사항을 규정하여 순찰 및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안전점검결과 미달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86호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 보조금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 마련

○ 환경조사 결과 공표 의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군민 정보 보호 도모

3.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안 제9조)

나. 지역환경기준 설정 조항 삭제(안 제13조)

다. 지역 배출허용 기준 설정 조항 삭제(안 제14조)

라. 지역환경평가 조항 삭제(안 제15조)

마.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근거 구체적 명시(안 제17조)

바. 환경백서 조항 삭제(안 제26조)

사. 보고 조항 삭제(안 제27조)

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 보조금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기업이나 군민의 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87호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거창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와 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3조제2항제3호)

○ 환경부예규 제561호(2015.8.31. 일부개정)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에 따라 별표를 추가하여 심의대상 규모를 명문화하였음.

나.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3조제4항)

○ 환경부예규 제561호(2015.8.31. 일부개정)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중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국장 또는 유역환경청의 환경관리국장 및 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군수에서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와 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여 행정력 낭비 예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88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6조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17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활동(계약의 자유)침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89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행정 및 재정지원 개정(안 제19조)

○ 군수는 개인 및 민간단체 등에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지원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위원회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다.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0조)

○ 조례명칭 변경『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원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90호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농업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나. 목적(안 제1조)

○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다. 용어의 뜻 순화함(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농업보조금 ⇒ 농어업보조금, 농업 ⇒ 농어업, 공익발전 ⇒ 농업발전,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농업협동조합 ⇒ 농어업법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인법인

라. 계획의 수립 조항 신설(안 제3조의2항)

○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마.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안 제4조)

○ 군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 원예농산물 FTA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지원
-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
- 농산물 수출 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 보조사업의 지원범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농업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행정 및 재원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91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인터넷 쇼핑몰 '거창몰' 용어 정의와 위탁운영 근거 마련

○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

○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제4호, 안 제2조제6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령 명칭 변경

나.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

○ 위원회구성 시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위촉위원의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 적용

다.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안 제28조제1항제3호)

○ 거창군 쇼핑몰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조항 신설

라.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안 제28조제3항)

○ 거창푸드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마. 위탁운영(안 제29조제7항)

○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바. 지원사업(안 제29조의2)

○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농산물 품질관리사 운영 지원사업
-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 지역관광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사. 위탁의 취소(안 제30조제3항)

○ 군수는 수탁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유통 전문인력 확보,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터넷 쇼핑몰 ‘거창몰’ 용어 정의와 위탁운영,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 설치·운영,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거창푸드 종합센터 직매장 설치 주요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운전자금관리 현황 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토록 주문하였습니다

○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92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제정이유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기능, 실비변상(안 제5조 ~ 안 제8조)

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용(안 제9조 ~ 안 제15조)

○ 관리·운영,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 준수사항

라. 운영위탁(안 제16조)

마. 준용, 시행규칙(안 제17조 ~ 안 제1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지원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